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이혜경*

본 연구는 국내로의 혼인이주와 그 가정에 대한 연구로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본 후,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우선 통계청과 법무부의 자료와 그간 국내 선행연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인에 의해 수행된 2004년 7월 국제결혼중매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200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된 서비스부문 이주여성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혼인이주보다 외국인의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는 90년대 초반에는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통일교를 통한 혼인이주가 많으며, 수도권에서는 국내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많은 편이다. 셋째,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하여 중국교포 혼인이주 여성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이 더 용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교포 여성의 혼인이주는 국가간의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핵심단어: 혼인이주, 국제결혼, 중국교포, 필리핀 여성, 이주의 여성화

I. 들어가는 글

세계화 현상으로 해외여행, 유학, 취업 및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를 위한 국제결혼 즉 혼인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의 주역으로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들이 주목 받고 있다.¹⁾

*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노동이동의 여성화 현상이란 국가간 이주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과거 국가간 노동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노동유입국에서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등 대표적인 여성 직종을 내국인 여성들이 일종의 3D직종으로 여기어 꺼리게 되어서 이러한 직종으로의 이주여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국인 여성들이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게 되자, 이들의 배우자로 들어오는 혼인이주 여성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간 노동이 과거에는 노동송출국에서 노동유입국으로 ‘한방향’으로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이민”이 대표적인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양방향’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이주”가 대표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는 최근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가간 이주가 ‘상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송출국의 가족들은 가구원 중 노동유입국으로의 입국과 취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주기간 동안 번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려는 가족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여성의 이주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0% 정도가 그리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35% 정도가 여성이었다(Lee, 2003). 그러나 현재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연예인 비자(E-6)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5000~7000명의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들어온 혼인이주자(2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이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3년 약 44% 정도가 된다.

한편,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약 10만명 정도이며,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약 6만명이 좀 안되는 규모이다(<그림 1> 참조).

본 연구는 국가간 노동이주와 연관된 국제결혼 즉 혼인이주에 대한 것으로, 우선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로의 혼인이주 추이와 현황, 혼인이주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혼인이주 가정이 겪고 있는 갈등과 대응 방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과 법무부의 통계자료,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2차자료), 인터넷 조사, 그리고 200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본인이 수행한 서비스부문 내 이주여

이동에 있어서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는 자이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tied-mover)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이 주도적인 이동의 주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이다.

성과의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국외에서의 선행연구

그간 국제이주 및 국가간 노동이주에 대한 연구와 최근 이주의 여성화나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혼인이주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국가간 노동이주에 있어서 혼인이주란 부수적인 현상으로 즉 부인이 남편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이주자(tied-movers)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혼인이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왔다. 즉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³⁾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으며, 우편주문신부는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불리우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몇 장의 고국 여성사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법이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내 백인과 혼인할 수 없으므로, 고국에서 여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 (Schaeffer-Grabiell, 2003:177-178). 그러므로 이는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인종간의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부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Thai, 2002).

두 번째 유형인 전쟁신부 또는 미군아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2) 본 조사의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2003.12.1~2004.11.30)을 받은 “이주여성의 일과 가정 그리고 삶” 연구를 위해 본인이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이주여성(20여개 식당조사와 30여명의 이주여성)을 심층인터뷰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식민지 신부(colonial brides)란 용어도 있으나, 그 내용은 전쟁신부(war-brides)와 유사하다.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혼인이주로서 인종간 결혼인 국제결혼의 호시이나, 이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자(tied-movers)’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 이러한 결혼을 기지춘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근 여지연(Yuh, Ji-Yeon, 2002)은 미국 내 한인 미군아내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과는 달리 매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유형인 우편주문신부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매스컴의 선정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지, 그 규모에 비해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단지 매스컴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우편주문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나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로, 상업화된 국제 중매기관의 ‘희생자’로,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O'Rourke, 2002; Perez, 2003 등).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나온 두 편의 박사논문은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즉 사이몬스(Simons, 2001)는 그녀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기관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될 필요는 없으며, 우편주문신부현상이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페미니즘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은 페미니즘이 보다 더 확산된 ‘남녀평등한’ 사회에서, 그러나 남성은 페미니즘이 덜 확산된 어느 정도 ‘남녀불평등한’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새퍼-그라비엘(Schaffer-Grabiell, 2003)은 그녀의 중남미 여성들 사례를 통해, 우편주문신부가 단순히 하층계급 출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여성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선택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 일본과 대만에서도 혼인이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Wang and Chang, 2002; Hsia, 2004). 그러나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혼인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트롱(Truong, 1995), 파이프(Piper, 1997), 그리고 유(Yu, 2001)이다. 우선 트롱(1995)과 유(2001)는 우편주문신부를 경제적 이주자로 파악하며, 특히 이들의 “재생산노동자(reproductive workers)”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노동유입국)의 가사서비스 부문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3세계(노동송출국) 여성을 이주노동자로 또는 혼인이주자로 불러들이며, 이는 재생산(노동)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을 야기한다고 보았다(Truong, 1995:142-143).

한편, 파이퍼(1997:333)는 월비(Walby, 1990)의 가부장제 이론으로 국제결혼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아시안 여성들이 일본 내 유흥업소 밖에서는 취업하기 어렵게 하여, 이들 여성들을 유흥업 부문으로 더욱 집중시키고, 이들은 스넥바나 카테일바 등에서 만난 일본(하류층)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어, 결국 일본 사회의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적은 현실에서 최근 파이퍼와 로스(Piper and Roces, 2003)는 혼인이주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모아 한권의 책(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으로 편집하였다. 이들은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를 (우편주문)신부나 부인(wife) 아니면 가정부나 유흥업종사자 등의 노동자(worker)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는 것보다는 노동자로 이주하였다가 현재의 남성과 혼인해 부인이 되기도 하며, (우편주문)신부 등 혼인이주 후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한다. 혼인이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파이퍼와 로스 등의 연구는 향후 혼인이주와 국제결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란 주로 미군아내인 한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이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이 연구들은 미군아내인 한인 여성들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까지 겹쳐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 여지연(Yuh, Ji-Yeon, 2002)은 그녀가 직접 만나본 미군아내인 한인 여성의 상당수는 실제로 기지촌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들도 다른 일반 미국교포와 다른 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국사회는 물론 교포사회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자기들만의 여성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⁴⁾ 특히 그녀의 연구는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결혼내의 부부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4)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여성의 수는 1950년대 20, 20, 80, 150명씩 해마다 늘어나 1960년대에는 해마다 평균 2천명씩,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연평균 4천명 정도이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9일).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혼인이주를 떠남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 특정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주여성 지원단체는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석원정, 2004)을 소개하였고, 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홈, 2003)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충남, 강원도, 전남과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도내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조사(김애령, 1998; 서영주, 2001; 민경자, 2003; 박현정, 2004; 이윤애, 2004)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인류학 쪽에서의 김민정(2003)과 윤형숙(2004a; 2004b)의 연구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석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수개월 이상 혼인이주자나 그 가정 및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참여·관찰하여 풍부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과 필리핀 여성(윤형숙, 2004b)에 대한 연구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조성원, 2000; 전수현, 2002; 김민정, 2003; 김정선, 2004)는 혼인이주의 과정과 이들의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는 한일국제결혼에 대한 2편의 석사학위 논문(인봉숙, 2001; 한주연, 2002)이 있으나, 이들은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쳐 풍부한 내용을 전하지는 못하였다(<표 1>).

국내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지 약 15년,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현상이 가시화된 지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아직 이주여성에 대한 그리고 혼인이주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몇몇 논문들이 참여관찰을 통해 혼인이주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가 적은 편이어서 특정집단의 사례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 혼인이주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표 1〉 혼인이주에 대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조사시점	실태조사	조사지역	조사국적	사례수
한국남편 + 외국부인				
1995	성지혜(1996)	서울, 경기도	조선족 여성 (8) 한국 남성 (1)	9
1997.9-11	김애령 (1998)	충남	조선족 여성 (30) 한국 남성 (31)	61
1999.6-2000.3	홍기혜 (2000)	서울, 경기도	조선족 여성 (14)	14
2001.9	인봉숙 (2001)	충남 (천안시)	일본 여성 (통일교 가정)	모 (100) 자녀 (95)
2001.2	법무부 (2001)	한국	외국인 배우자	20,172
2001.5	서영주(2001)	강원도	일본 여성(99) 조선족 여성(79) 필리핀 여성(42)	220명
2002.3	한주연 (2002)	서울	일본 여성 (22) 한국 남성 (13)	35
2002.10	광주여성발전센터 (2002) 문옥희(2004)	전남 (목포, 무안, 영암)	일본 여성 (32) 조선족 여성 (9) 필리핀 여성 (46) 기타 (13)	100
2002.11-12	민경자 (2003)	충남	일본 여성 (7) 조선족 여성 (7) 필리핀 여성 (6)	20
2003	민가영(2004)	서울	조선족여성(5)	5
2003.9-2004.9	윤형숙(2004b)	전남 (4개군)	필리핀여성(20)	20
2004.8-11	박현정(2004)	전남 (광주)	일본 여성 (36) 조선족 여성 (9) 필리핀 여성 (78) 기타 (17)	140
2004.10-11	이윤애(2004)	전북	일본 여성 (128) 조선족 여성 (156) 필리핀 여성 (130) 기타 (67)	481
한국부인 + 외국남편				
1998.5-11 2003.3	조성원 (2000)	서울, 경기도	파키스탄 남성 (5) 필리핀 남성 (4) 방글라데시 남성 (4) 기타 아시아 남성 (4)	17쌍
2000.12-2001.6 2002.2-4	전수현 (2002)	서울, 경기도	필리핀 남성 (8)	8쌍
2002	김민정(2003)	서울	필리핀 남성(5)	5쌍
2003	김정선 (2004)	경기도	네팔 남성 (8) 파키스탄 남성 (2)	여성 (5) 남성 (5)

Ⅲ. 1990년대 이후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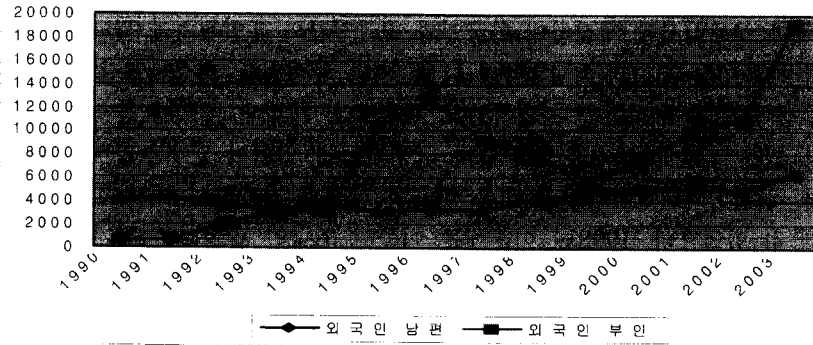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이란 주로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이나 일본인과 결혼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우리사회로 들어와 사는 것은 비교적 드문 현상이었다.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규모는 1970년 3,700건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79년 6,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100건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1997:109; 2003:117).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혼인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웃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혼인이주로서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국제결혼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그림 1>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그림 1>은 1990년대 초까지는 국제결혼이란 한국인 여성이 주로 하는 것이었지,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0년 60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중국교포와의 인적교류가 학생·교수의 인적교류와 친척방문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 말부터 농촌 노총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동포에게서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농촌의 영농후계자 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아름답고 농촌 총각들의 중국 농촌시찰 명목의 맞선보기 방문을 후원하였다.⁵⁾

5) 1990년 농촌총각과 연변처녀와의 국제결혼 1호가 나왔다. 경기도 파주의 이모군(27세)은 중국연변 정양(21세)과 1990년 12월 22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이는 숙명여대 정치학 교수로 있다가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윤기소장이 1989년 설립한 [해외한민족연구소]를 통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이소장은 만주문제를 연구하던 중 단절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핏줄의 재결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1989년 중국을 방문해 신부감을 물색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990/12/16, 19면). 한편,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연변으로 맞선보러 가는 강원도 총각 11명의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1991년 7월 26-28일에 농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한다는 기사도 있다(중앙일보



출처: 1990-2000: 통계청 (1999:127; 2000:142)
 2001-2003: <http://kosis.nso.go.kr> (접근일: 2004년 7월)

<그림 1>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추이: 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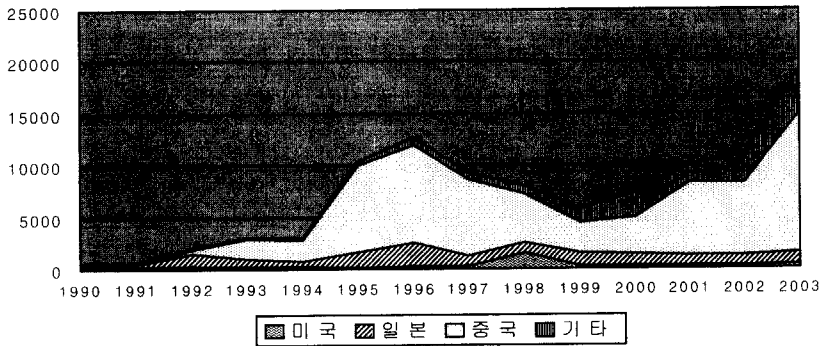
그러나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이후에는 농촌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초기에는 중국의 공신력 있는 민간인(주로 중국교포 교수나 전직공무원)과 연계하여, 나중에는 도시간 협정체결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⁶⁾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특정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도 증가하였다(윤형숙, 2004b).

<그림 2>는 199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여준다.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중국교포) 여성이다. 1996년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그 이후 중국교포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1/07/24, 16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전북 임실의 사선문화재 위원장이 사단법인 [가정 복지연구회]의 ‘제3차 영농후계자 결혼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는 기사(중앙일보 1992/07/09)와 한국통신이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설한 후 원격 영상 맞선을 시도하였다는 기사(조선일보, 1992/10/31, 23면), 그리고 밀양 청년회의소가 밀양의 영농 후계자와 중국동포 처녀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는 기사(조선일보, 1993/03/06) 등이 있다.

6) 충북 옥천군 의회는 1993년과 1994년에 농촌총각 결혼주선을 위해 중국 장춘시에 도내 연수자를 파견하였으며(옥천군 의회 자료: www.oc.or.kr/t-6.asp, 접근일 2004년 11월 5일), 전북 장수군은 1995년부터 건설한 농촌총각을 선발해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을 알선했으며(새전북신문, 2003/12/10), 전북 정읍시는 1996년부터 부녀복지계 주관으로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의 맞선은 물론 시장의 주례로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었다(한겨레신문, 1997/04/23). 최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북 보은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으로 국제결혼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농촌총각에게 1인당 250만원 안팎의 여비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대한매일 2002/12/16), 전남 담양군은 필리핀 카멜링시와, 그리고 경남 합천군은 중국 길림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조선일보 2003/09/03; 2003/10/27).

그 이유는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1996년 9월부터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혼인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였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1998년 6월 14일부터 새로운 국적법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적법 중 국제결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이다. 그간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이들도 외국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 국내체류 기간이 2년이 지난 후에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998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으나, 이러한 법 개정의 이면에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가 깔려 있었다.⁸⁾ 이 밖에도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1998년과 1999년의 국제결혼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출처: 1990-2000: 통계청 (1999:127; 2000:142)
 2001-2003: <http://kosis.nso.go.kr> (접근일: 2004년 7월)

<그림 2>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추이, 1990-2003

- 7)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시행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의 미혼(재혼) 공증→중국 혼인신고→중국결혼공증→한국 혼인신고→중국 배우자 비자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한중간 국제결혼 양해각서가 폐지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양국 호적 관련 기관에 혼인신고를 한 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비자만 받으면 된다(한겨레신문 2003/06/20).
- 8)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 2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3년 12월 국적법 간이 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거의 2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1999년 8월부터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결혼알선기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 알선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외 중매기관의 수는 2003년 700여개이었고(한겨레21, 2003년, 450호:50), 이 가운데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기관만도 70여개였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3/02/08). 2004년 7월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상에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기관은 180여개였다(<표 2> 참조).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증가로 2000년 이후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다시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외국인 여성의 국적이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는 업체가 유행하여, 이들과의 혼인이 크게 증가하였다.9) 한편, ‘휴가 때 장가감시다’라는 이벤트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맞선여행을 주선하는 중매기관도 등장하고 있다(동아일보, 2003/06/25, 38면; 조선일보, 2003/08/02, 7면).

<표 2>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의 수, 2004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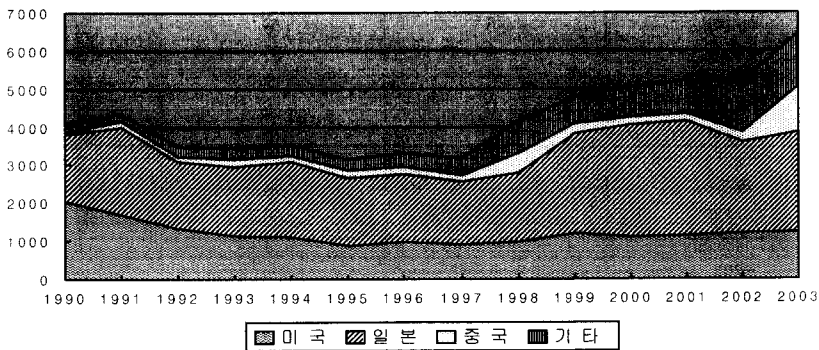
소개하는 국적	한 국적만 전담하는 기관의 수	다른 국적과 함께 다루는 기관의 수	소개하는 여성 또는 남성의 수
외국인 여성을 소개 (164개소)			
중국(교포)	27	84	5~120
필리핀	9	60	15~109
베트남	19	78	6~302
러시아	5	46	5~225
우즈베크	1	35	7~479
카자흐스탄	0	9	3~181
캄보디아	0	5	98~279
고려인	1	10	40~125
태국	0	3	0~17
몽골	2	20	27~240
아시아	-	68	20~601
키르기스스탄	-	3	17~354
남미	1	-	33
모든 국적	-	10	13~469
기타	-	9	-
외국인 남성을 소개 (12개소)			
일본	10	41	2~26
미국	2	15	0~10

출처: 인터넷 자료조사 (접근일: 2004년7월4일~8월7일)

9) 중국과의 국제결혼이 2003년 이후 간소화되었다 하여도 중국에서 신부가 입국하기까지는 최소 5개월이 걸리고, 서류상의 미비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6개월까지 더 소요될 수가 있으나, 베트남은 2-3개월이면 신부가 입국할 수 있어서 최근 더 선호되고 있다.

2.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그림 3>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별 규모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우선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그 규모에 있어서 1990년 약 4,000건에서 1997년 약 3,200건으로 약간 감소하다가 1998년부터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6,400건 정도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과 미국이 가장 많으나, 미국인과의 결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본인과의 결혼은 199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특히 신용불량자의 국내 탈출 방법의 하나로 일본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문화일보, 2004/03/11, 27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일본인 남성을 주로 소개하는 전문 중매기관도 생기고 있어서, 2004년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 가운데 외국인 남성을 소개하는 기관이 12개소로 그 가운데 10개소가 일본인 남성을 소개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한편 그간 200여명에 불과하던 중국(교포 포함)인과의 결혼이 2003년 1,2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주목하자.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카드빚과 도박빚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여성들이 국내 알선조직을 통해 중국(조선족 포함) 남자와 ‘역위장결혼’한 경우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 2004/03/19).



출처: 1990-2000: 통계청 (1999:127; 2000:142)
 2001-2003: <http://kosis.nso.go.kr> (접근일:2004년 7월중)

<그림 3> 한국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추이, 1990-2003

IV. 국내 혼인이주자의 특성

1. 재혼자의 결혼상대

<표 3>과 <표 4>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어느 정도가 재혼(이상)인가를 보여준다. 2001년부터 2003년 동안에 내국인간의 결혼에서는 17~18%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33~41%가 재혼자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39~48%가 재혼자로, 재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재혼자의 비율(13~16%)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표 3>은 1990년대 초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층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이후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증가하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내국인과의 이혼한 남성들은 그들의 재혼 상대로 중국(교포) 여성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한국남성의 혼인 중 재혼의 비율(%), 2001-2003

		2001	2002	2003
국내결혼		16.5	17.2	18.4
국제결혼		32.6	33.2	41.0
배우자국적	미국	28.0	29.8	30.7
	일본	13.0	14.6	16.3
	중국	38.6	40.8	48.3
	필리핀	20.3	20.0	21.9
	베트남	26.3	27.4	29.3

출처: <http://kosis.nso.go.kr> (접근일: 2004년 7월 중)

그리고 이러한 재혼 현상은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도 발견된다(<표 4>). 특히 일본인 남성과 내국인 여성의 결혼 중 50% 정도가 이혼여성이 재혼한 경우였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교포 포함)과 파키스탄 등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하는 내국인 여성들도 점차 재혼인 경우가 증가하여서, 2003년에는 중국(교포)인 및 파키스탄인과 혼인한 내국인 여성의 69%와 54%가 재혼한 경우였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들 이혼자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그들의 재혼상대로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성도 외국인과 재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한국여성의 혼인 중 재혼의 비율(%), 2001-2003

		2001	2002	2003
국내결혼		16.5	17.2	18.4
국제결혼		37.5	34.2	41.5
배우자국적	미국	22.3	20.2	23.1
	일본	52.2	52.6	49.5
	중국	22.4	38.6	68.8
	파키스탄	37.5	45.2	53.9
	기타	18.5	17.2	28.2

출처: <http://kosis.nso.go.kr> (접근일: 2004년 7월 중)

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표 5>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을 재구성하여 부부간 연령 차이를 계산해 본 것이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주로 소규모의 사례연구이거나, 특정 지방에서의 조사연구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집계한 연령 차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략의 윤곽은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과 중국교포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8~12살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나 주로 통일교로 들어온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약 2세로 작은 편이다. 한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3~4세 정도이며, 몇몇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편보다 1~2세 정도 연상인 경우도 있었다.

〈표 5〉 선행(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국제결혼부부의 연령 및 연령차이

부인		남편		연령 차이	출처
국적	연령	국적	연령		
조선족 (8)	20대 (2) 30대 (5) 40대 (2)	한국 (9)	20대 (1) 30대 (2) 40대 (4) 50대 (2)	9.3	성지혜 (1996)
조선족 (14)	20대 (7) 30대 (5) 40대 (2)	한국 (-)	-	10-12	홍기혜 (2000)
일본(99)	20대 (55)	한국 (-)	20대 (6)	2	서영주 (2001)
조선족(79)	30대 (128) 40대 (33)		30대 (103) 40대 (101)	7.7	
필리핀(42)	50대이상 (2)		50대이상 (7)	6.5	
일본(128)	20대 (114)	한국 (-)	30대 (129)	8	이윤애 (2004)
조선족(156)	30대 (266)		40대 (305)		
필리핀(130)	40대 (93)		50대 (38)		
기타(67)	50대 (8)		60대 (9)		
한국 (17)	20대 (10) 30대 (7) 연상 (1)	파키스탄 (5) 필리핀 (4) 방글라데시 (4) 스리랑카 (2) 네팔 (1) 중국 (1)	20대 (4) 30대 (12) 미기입 (1)	+2.7 (-1)	조성원 (2000)
한국 (8)	20대 (2) 30대 (6) 연상 (1)	필리핀 (8)	30대 (7) 40대 (1)	+3.6 (-2)	전수현 (2002)
한국 (10)	20대 (0) 30대 (10) 연상 (5)	네팔 (8) 파키스탄 (2)	20대 (2) 30대 (8)	+3.2 (-2.2)	김정선 (2004)

- : 한국인 남편에게는 설문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음.

출처: 〈표 1〉

이러한 결과는 중국교포와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은 주로 농촌 노총각이거나, 도시의 재혼남성이므로 이들 남성의 연령은 비교적 높으나,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등록된 조선족 여성과 다른 외국인 여성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20대로 젊기 때문이다. 강원도, 전남과 전북의 조사에서는 일본여성의 대부분과 필리핀 여성의 약 30%정도가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었는데, 통일교에서는 국제결혼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등을 어느 정도 맞추어 결혼시키고 있어서, 통일교를 통한

결혼은 비교적 부부간 연령 차이가 작고, 중매기관을 통한 결혼은 부부간 연령 차이가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은 주로 이들이 공장에서 만나거나, 또는 중매보다는 연애를 통해 혼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령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이다.

3. 국내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

199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한 중국교포여성에게 혼인취소와 위자료 배상을 판결하였고(중앙일보 1994/10/04; 조선일보 1994/10/05), 1996년 1월에는 불법체류를 위해 국내에서 위장결혼을 한 중국교포 여성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조선일보, 1996/01/10)는 기사를 시작으로 1996년 이후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국제결혼”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에 총 48건, 중앙일보에 총 32건이었고, 그 가운데 1/2의 기사가 위장결혼 관련 기사였다. 이러한 위장결혼에 대한 기사는 1996년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선일보 48건의 기사 중 16건이 그리고 중앙일보 32건의 기사 중 8건이 중국교포 여성 위장결혼과 관련된 기사였다. 물론 최근에는 러시아 여성의 위장결혼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도 있었지만(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3/02/08), 위장결혼 문제란 주로 중국교포 여성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바람’이 불면서 국내로 들어와 돈을 벌려는 중국교포는 많은데 비해, 입국시 연령제한 등 국내유입의 통로가 매우 좁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8월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의 등록유도를 통한 제한적인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2003년 중국교포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남성과 중국교포 여성과의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과 중국교포 남성과의 국제결혼도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와 <그림 3> 참조). 따라서 2003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중국교포의 위장결혼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충남, 강원도, 전남과 전북 등 지방에서의 조사들은 조사시점 당시 해당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국제결혼자들을 조사한 것이므로, 위장결혼의 사례가 표집될 수 없었다. 그러나 본인이 수행한 2004년 국내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조사에서는 특히 서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교포 여성들에게 혼인이주는 물론 위장결혼의 사례가 많

이 발견되었다(<표 6>). 본 조사는 20여개의 식당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울에 있는 5개 식당은 조선족 여성들이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열어 주로 형제나 동향 사람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5개의 식당 가운데 네 곳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식당을 차린 것이고, 국제결혼을 한 이들 4명의 식당주인 가운데 한명만이 한국인 남성과 살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경제적인 이유이거나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29명의 조선족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8명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이고, 이 가운데 5명은 위장결혼이었다.

본조사가 수행되었던 시점인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고용허가제의 통과와 실시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매우 심각하였던 시점이므로 식당에서 조선족을 고용할 경우에도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어려웠고,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나 합법적인 체류자만을 선호하는 시점이어서, 혼인이주자와 위장결혼자가 많이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의 혼인이주와 위장결혼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14(현재 40세, 서울에서 식당서빙)는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998년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18세인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조선족인 전남편이 중국에서 돌보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남편)과 상의하여 나왔다. 한국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중간에 소개해 주는 사람(여기서는 브로커라 하더라)에게 돈을 주고... 이래저래 다 합치면 여기 돈으로 1,000만원이나 들었다. 어쨌건, 다른 방법으로 나오려 해도 한 1,000만원 정도는 다 든다. 1998년 6월에 결혼하여 2000년에 국적을 취득했다.”

본 조사자가 한국인 남편에 대해 묻자, “한국인 남편은 45세로 울산에서 농사를 짓는다.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남의 사생활이 아니가! 이렇게까지 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하고 화를 내어서 더 자세한 물을 수가 없었다 (중국고포 사례14, 40세, 식당서빙).

사례15는 고용주 사례15의 친언니로 자매가 모두 위장결혼을 한 경우였다. 4남 4녀 가운데 둘째로 중국에서 1980년에 혼인하여 현재 24살인 아들이 1명 있다. 조선족 (전)남편과는 이혼하였다고 하고선, 남편에 대해 물으면 전남편을 남편이라고 하고, 한국남편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한 신상정보

〈표 6〉 본 조사 응답자의 특성

사 례	연령	거주지	혼인	국제결혼	위장결혼	직업
중국교포 고용주13	49세	서울	재혼	0		
중국교포 고용주15	40대	서울	초혼	0	0	식당운영/식당서빙
중국교포 고용주17	39세	서울	초혼	X	X	식당주인
중국교포 고용주18	30대	서울	-	0	0	명의만 식당주인/현재 일본에서 취업중임
중국교포 고용주20	29세	안산	초혼	0	X	식당주인

피 고용인 사례

중국교포 사례1	31세	대전	초혼	본인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	38세	대전	초혼	본인	X	회사통역
중국교포 사례3	70세	대전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4	65세	대전	초혼	딸(2회)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6	36세	대전	재혼	본인	0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8	59세	서울	초혼	조카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9	49세	서울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10	52세	경기도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11	49세	서울	초혼	X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2	40세	서울	초혼	여동생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3	34세	서울	초혼	X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4	40세	서울	재혼	본인	0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5 (고용주15의친언니)	50세	서울	재혼	본인	0	식당서빙/운영
중국교포 사례18 (고용주18의친언니)	41세	서울	재혼	본인	0	식당서빙/운영
중국교포 사례19 (18의 동향)	32세	서울	초혼	본인	0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3	42세	포항	초혼	본인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7	31세	충남 공주	초혼	본인	X	무직/공장
중국교포 사례29	53세	서울	초혼	X	X	식당/가정부
필리핀인 사례1	31세	대전	초혼	본인	X	필리핀식품판매
필리핀인 사례2	35세	대전	초혼	본인	X	회사통역 등

자료: 본인이 2004년 3~12월 사이에 인터뷰한 사례
(고용주 사례 20명, 피고용인 사례 30명(조선족 28명, 필리핀인 2명))

만을 알고 있어서, 위장결혼임을 알 수 있었는데, 한 참을 이야기 한 후에 야, (전)남편이 장사를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전)남편

과 상의를 하여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본인은 위장결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현재 (전)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가서 (건설)현장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족 전남편이 빚을 지게 된 경위는 1990년 친척방문(큰아버지 초청)으로 전남편과 사례15인 아줌마가 함께 한국을 나와서 3개월 정도 한약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때 번 돈으로 중국으로 돌아간 후 남편이 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빚을 많이 졌다고 하였다. 빚이 어느 정도이냐고 물어도 그냥 “매우 많다”고만 대답하다가, 나중에야 “여기 돈으로 수 억원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여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기로 하였는데, 당시 한국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혼(한척)하고 한국인과 1996년 11월에 혼인하여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수소 문하여) 우연히 알게 된 사람(브로커)에게 1,000만원이나 들여서 나왔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기본사항만 알지 처음부터 함께 산 것이 아니므로 자세히는 잘 모르며, 한국에 오자마자 가정일, 아이 돌보는 일 등 지난 8년간 계속 일했고, 1년 반 전부터 동생과 함께 조선족식당을 열었다. 두 번째 만나서야 “한국인과의 혼인은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고, 빚을 다 갚으면 (전)남편과 함께 살 것이므로 중국국적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으나,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므로, 실제 이름(본명)으로 된 중국국적은 살아 있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의 계획에 대해 묻자, “중국으로 가야지... 자식이 있으니... 돌아가서 살아야지” 하여서,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남편과 다시 살 예정이세요?” 하였더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자식 보고 살아야지” 하였다(중국교포 사례15, 50세, 식당 서빙/운영).

사례18은 자매 모두가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으로 나왔고, 먼저 혼인이주를 하여 일찍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동생(현재 일본에서 취업중이라고 함)의 명의로 식당을 차려서 언니인 사례18이 운영하고 있었다. 언니인 사례18은 중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로 현재 17세인 아들은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전)남편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 조사자가 남편에 대해 물으면 조선족 남편은 물론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단지 한국인과 혼인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고, 한국인 남편(재혼)도 이를 알고 한 것이라 하였다. 2000년 1월에 중국에서 결혼하여 5월에 입국하였고, 현재 한국국적을 신청한 상태이나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자취방에서 혼자 산다고 하였다 (중국 교포 사례18, 41세, 서울 식당서빙/운영).

한편 이 조선족식당에서는 사례18 자매의 고향사람인 사례19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사례19 역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혼인이주를 감행한 사람이었다. “사촌언니들이 다 국제결혼을 하여 동생과 나도 소개를 받았다... 한국으로 나오기가 힘들어 혼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례19는 2004년 8월에 입국하였으므로 아직 한국국적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인 남편(41세, 지방에서 회사 다님)과는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았으며, 한국인 남편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고 단지 한국인 남편도 본인도 다 초혼이라고만 하였다. 현재 사촌오빠와 함께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혼인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딸이나 여동생 또는 조카가 혼인이주를 한 경우도 많아서 혼인이주가 중국교포에게 한국입국의 한 중요한 통로임을 알 수 있었다. 대전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할머니(사례4)에 의하면, “중국교포에게 한국인과의 결혼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른 길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초기에는 딸 가진 부모들이 교포나 한족과 결혼시키기보다는 한국남자와의 혼인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조심하고 있다”고 하였다(사례4, 65세 대전에서 가정부 취업 중).

조선족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중국교포여성인 고용주17에 의하면, “원래 조선족 여성들이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왔지만, 작년(2003년)부터는 조선족 남자들도 한국여성과 결혼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현재 데리고 있는 조선족 여성도 일종의 위장결혼으로 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이예요. 요새는 한국국적이 있거나 합법인 사람만 써야지 불법을 썼다가는 큰 일 나요” 하였다(고용주17, 39세, 조선족 식당 운영).

고용주17은 인터뷰가 다 끝날 때 즈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위장결혼을 했더라도 나중에 중국 들어가서 살려고 중국 국적은 다들 유지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꾸어서 한국에 나와 한국국적을 얻은 것이므로,

우리(둘 다 조선족인 남편과 나)도 한국국적이 있지만 중국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중국에 돌아가서도 살 게 아닌가!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서 자신의 본래 이름을 그냥 쓰는 중국교포가 어디 있겠나?” 하였다.

위장결혼이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은 많은데, 한국으로의 입국통로가 막혀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 때 조선족 또는 외국인이 혼자서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인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이주통로를 열어 주고, 위장결혼에 동원되는 한국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국제결혼중매업체(또는 브로커)의 위장결혼 알선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중매업체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국제결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활동을 감독·관리할 방법이 곧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¹⁰⁾

V.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국내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및 고부간의 갈등, 가정폭력 및 자녀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이주와 마찬가지로 혼인이주도 국내 여성이 기피하는 주변층 또는 하류층으로의 유입이므로 일어난다. 그리고 국가간 노동이동이 자국의 거세어지는 노사관계를 피하기 위해 보다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찾기 위함인듯이, 혼인이주 역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여 보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데려와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부부관계의 계급성을 지켜내려는 역행현상이다.

1. 가정경제의 어려움

주로 농촌과 도시 하류층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므로, 국제결혼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 조사된 국제결혼

10) 위장결혼의 문제를 막기 위해, 그간 혼인중개업소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5년 1월 김춘진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필요하다.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4~58% 정도이다(김애령, 1998; 서영주, 2001; 이윤애, 2004).

본 조사에서도 사례23은 혼인이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입국 후 5년간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경우이다. 혼인이주를 하여 지금은 반나절씩 포항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23은 “북경에는 조선족 가구가 2,000가구 밖에 없어서, 조선족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북경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남자를 소개받아 사귀었는데, 그 때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다고 해서, 북경에서 1993년 12월에 결혼하고 수속을 시작하여 (서류가 나오는 것이 6개월이나 걸려서) 1994년 6월에야 한국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근데... 그 때는 한국사정을 몰라서 그랬지... 막상 나와 보니... 중국에서 듣던 것과는 다 달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무슨 기계를 중국에 가져가 파는 사업을 하려고 북경에 왔다는데, 북경에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내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가운데 소개한 사람도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하여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 와 보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내가 수태 고생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밖에 나올 수도 없었고... 아이를 곧 낳아서... 처음 5년은 없는 신랑 만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5년째인가 너무 힘들어 안살라고 이혼소송까지 갔었는데... (내가 이혼소송을 하였지요.) ...그러나 애들 때문에 그냥 살게 되었어요.” 하였다. 현재는 남편도 직장을 구했고, 본인도 식당을 반나절씩 일하고 있어서 살림이 처음보다는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 23은 “당시 한국사정을 너무 몰랐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그리고 사례23은 “처음엔 다 힘들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것도 다 힘들었어요. 언어문제도 힘들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밖엔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도 말하는 것도 나중에야 하게 되었지요”라고 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혼인이주자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생활에서의 부적응은 물론 주변 이웃과의 부적응을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중국교포 사례23, 42세, 포항에서 식당 서빙).

2. 사적 부부관계의 계급화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간 결합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결합이어서 문제인 것이다. 마치 가난한 집(국가)에서 데

려운 아내를 (합부로) 대하듯, 국가간 경제차이로 인해 결혼자체의 문제가 더 증폭되는 것이다. 즉 혼인이주로 결혼자체의 문제인 가부장제적 경향이 더 강화되고, 국가간 불평등이 사적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어, 부부관계가 마치 준계급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이 때, 국적이 이러한 계급관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는 국가간 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결혼 자체의 문제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동일한 계층간 결혼이거나, 부인의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는 친정의 위세가 작용하여 부인을 합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부인의 계층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에는 합부로 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잘사는 나라 (비록 하층 남성일지라도)의 남성과 못사는 나라의 여성이 결혼 한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계급자원으로 역할을 하여 못사는 나라에서 온 부인을 더 합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주부는 가정폭력으로 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며, 남편과 시댁은 물론 이웃들도 “한국에 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해 주고, “일본 사람은 옛날에는 나빴지만 이렇게 한동네에 살면 다 한가족”이라고 말해 준다고 한다(와타나베 미유키, 2004: 63). 그러나 중국교포나 필리핀 주부 등 다른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부인에게는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며”(조선족 사례2, 27, 29) “니네 나라에도 냉장고가 있느냐? 백화점은 있느냐?”란 식으로 멸시한다는 것이다(필리핀인 사례1과 2).

3. 성별 기대차이

한편, 국제결혼은 최근 여성주의(feminism)의 확산에 대한 남녀 각각의 다른 대응방식이거나 전략이므로 그 시작부터 어느 정도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 이면에는 특히 국제 중매결혼에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가부장제적 결혼을 유지하고 싶으며, 거세어지는 내국인 여성보다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3세계의 여성은 자국에서의 좌절과 갈등으로부터의 도피와 남녀차별적인 환경에서 해방되고픈 희망으로 덜 가부장적으로 보이는 상대나 경제적으로 나은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한다. 따라서 남성은 과거식의 보다 ‘남녀불평등’한 결혼관계를 원하고, 여성은 보다 ‘남녀평등’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남녀간 기대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그 기대가 잘못임을 알았거

나 그 기대가 깨어졌을 때의 대응방식은 각 집단의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VI. 혼인이주자의 대응

윤형숙(2004b)은 국내 매스컴이 혼인이주 가정의 외국인 부인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국제결혼의 뒷에 걸린 신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담론적 식민화의 한 예라고 지적하면서, 혼인이주 필리핀 여성의 경우에도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윤형숙은 필리핀 부인들이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안에서의 일상적인 저항, 조롱, 남편과의 거리두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교회나 필리핀 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조사에 응답한 혼인이주 여성들도 각방쓰기, 이혼위협 및 이혼거부, 가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부장적 부부관계에 저항하고 있었다.

1. 각 방 쓰기, 가출 및 이혼

조선족 사례2(38세, 대전거주)와 필리핀인 사례2(35세, 대전거주)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대해 각방쓰기, 문을 잠구고 열어 주지 않기 등을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족 사례2는 현재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인 사례2는 “종교(가톨릭)적인 이유로”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각방쓰기를 통해 이미 정신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하였다.

본 조사의 중국교포 여성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한국에 가기만 하면 좋은지 알고,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한국으로 많이들 시집을 갔다. 그러나 집이 있다, 차가 있다하여 속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와 보면 시골에 살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집도 없고 등등...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중국교포 사례4, 65세).

물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처음부터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음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한국에서 잘 살려는 ‘코리아 드림’으로 온 경우에도 국제결혼중매업체(또는 국제결혼브로커)가 장래의 신랑감에 대해 준 정보가 달라서 실망하여 가출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골이라고, 집도 없다고 하였으면, 도망 안 갔을 것이다. 중매업체가 해 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중국교포 사례6, 36세).

통계청의 이혼통계 자료에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별거나 이혼을 하였다면, 더욱 구별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2001년 2월에 실시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1년 2월 방문동거자격(F-1)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총 20,172명이며, 이 가운데 이혼(별거) 사례는 111건으로 0.6%에 불과하지만, 무단가출과 기타(무단 전출)를 포함하면 10%에 가까운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무단가출자 및 기타자(1,763명)의 대부분은 중국인(1,206명)과 필리핀인(106명)이었다. 따라서 가정해체의 비율은 중국인 배우자의 16.2%와 필리핀인 배우자의 3.8%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1994-1997년 사이 총608가구가 한국인 남성과 중국교포 여성간의 국제결혼 가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79가구가 파경을 맞았다(충남도청 농정유통과(1997) 내부자료: 김애령 1998:5 재인용).¹¹⁾ 경기도에서는 총 1,500여쌍의 국제결혼 가정 가운데 무단가출이 200여건이었고 이혼이 180건으로 25.3%가 파경을 맞았다고 한다(매일경제 1997/06/12, 37면: 김애령, 1998:7에서 재인용). 한편, 호남지역은 2003년 9월 말까지 도내 1,079명의 외국인 주부¹²⁾가 이혼을 했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사람의 18.7%가 그리고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의 7.8%가 이혼하였다(중앙일보 2001/12/02). 따라서, 혼인이주가정 가운데 중국교포 가정이 다른 외국인 부인 가정에 비해 이혼과 가출 등 가정해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약 25%가 충남에서는 약 13%가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는 약 11%의 국제결혼 가정이 파경을 겪어서, 다른 지방보다는 경기도에서 혼인이주 가정의 해체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11) 이혼 13건, 도주 및 행방불명 33건, 기타 4건임.

12) 중국(635명), 필리핀(477명), 일본(399명) 주부 가운데 169명(10.7%)이 가정해체를 겪었다.

2. 취업하기

국내 혼인이주 가정 가운데 중국교포 부인과의 가정에서 이혼 및 가출 등 가정해체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필리핀 여성 등 다른 외국인 부인에 비해 이들 중국교포 여성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월비(Walby, 1990)가 지적했듯이, 가정, 사회, 노동시장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가부장제의 정도는 다시금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 내의 가부장제적 압박으로부터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출구(exit)가 있는 것이다.

사례29의 입을 빌리자면, “한국 사람들도 중국의 아가씨들 얻어올라고 힘쓰지 말라. 와가지고 괜히 속고 달아나면 다니까. 어디가나 언어가 통하니깐니... 나도 와서 사흘만에 벼룩시장 보고 일 찾은 거래요. 사흘만에 와서 일 찾고 전철 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니 내 이 나이에 이 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면 다 알아보는 거래요. 그런데 며할라고. 판판히 속는 일을 며할라고 하는데요.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는.. 며할라고.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또 (혼인해) 온 사람도 그렇죠. 올 때 목적부터가 틀리지만, 또 와서 보니까 지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단 말이래요. 그래서 와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래요.”하였다.

중국교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비록 농촌이라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고(김애령, 1998),¹³⁾ 생활력이 매우 강함을 지적하고 있다(민경자, 2003).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식당열기)을 관철한 경우도 있었다. 즉 조선족 사례20은 한국인 남편이 식당을 차리는 것에 반대하여도 결국 “신랑 돈 3,000만원을 들여” 가게를 차리고, 중국에서 남동생을 불러와 식당 일을 보게 하며, 이미 들어와 계셨던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친여동생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조선족 사례12는 “동생이 결혼 한지 10년이 넘었고 자식을 둘 두고 잘 살고 있어요. 여동생이 부모초청을 하여 어머니가 일찍부터 들어와 계신데...(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도 하고, 동생네 아이도 봐주고... 동생도 밖(식당)에서 일해요. 중국사람(여자)은 다 밖에서 일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으니... 일한지 오래 되요” 하였다.

13)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부인의 69.4%가 향후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김애령, 1998:109).

3. 자녀의 국제결혼 반대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혼인이주의 중요한 동기임은 사실이나, 전북의 조사(이윤애, 2004:72)에 의하면 혼인이주 여성의 59%가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례29는 만약 딸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에 딸이 한국으로 시집온다 하면 반대해요. 깨놓고 볼 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내 앞의 일처리를 하는 사람은 내 나라 사람하고 혼인을 하지만,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 지금 외국사람하고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분명한 일이지요. 돈이 없어서 정말로 생활하기가 곤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드매가 불구자던지,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여자를 얻어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 베트남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이 한국사람하고 혼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반대해요. 내 딸이 서른(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노총각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딸을 소개시키자고 하면, 내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국으로 시집보내지도 않을거니와 한국사람도 중국에서 여자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한국에서 아가씨들 찾으라고 그래요. 왜 중국에서 아가씨를 얻어와 가지고는 돈만 팔고 망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랬다가는 지 발만 부치고 달아나면 망하는건 누구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총각들이 녹아나잖아요” 하였다. 즉 한국사정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하류층에게로 시집보내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4. 한국인 이웃에 대한 무관심

낯선 이국땅에서의 적응을 위해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같은 인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주의 시기가 길어지면 현지의 이웃들과도 관계를 맺어 사회적 적응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주의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일본주부들의 경우에는 보은, 청주, 천안 등 각 지역별 ‘해바라기’ 모임 등 주한일본부인회가 있고, 경기도 이천에서는 한국주부와 일본주부로 구성된 ‘민들레’ 모임도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주부들의 경우에는 주로 교회나 필리핀 여성의 모임, 전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윤형숙, 2004b: 21). 그러나 충남, 전남, 전북 및 강원도 조사에서 중국교포 부인들은 비

교적 가까운 고향 친인척끼리만 교류를 하는 편이고 다른 한국인 이웃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도 주로 친인척이나 동향사람들끼리의 소규모 관계망을 중시하지 한국인과의 관계맺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중국교포 사례29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내 나라와 같이 생각하고 한국이 잘산다면 정말로 언제나 든든하고 이랬는데 진작 와 보니까 그렇게 아니래요. 우리를 중국인으로 취급하고 조선족이라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지금 설움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옛말에) 어른들이 ‘싫은 각시 오나가나 싫다’ 하더라마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내 집이 아니오 와도 내 집이 아니오. 오니깐 아닌게 아니라 내 집이 정말 아니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크가 이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뿌리는 한 뿌리인데... 어째서 이렇게 대하는가! 그래 광명에 동생된다는 친척만 다니지, 이래 친척 아닌 사람하고는 통화하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아요. 특히 한국인은 내가 와서 받은 인상이 중국 사람을 ‘아주 하시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나도 접근할 생각도 안하고, 그저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내 앞에 닥친 말만 하면 그저 그거로 끝나는 거래요” 하였다.

중국교포 사례27도 “내가 없이 사니, 주변의 한국인 이웃과도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고 우쭐대고 거만하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무시한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저 눈을 깔고 본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 중 위장결혼자는 자신의 위장결혼에 대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도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돈이 든다” “저쪽 (한국인 남성)도 알고 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위장결혼 사실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위장결혼으로 비록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취업중인 사람들도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 살 수도 있으므로 아주 가까운 친인척을 제외한 다른 중국교포나 한국인을 만나길 꺼리고 있었다.

한편, 결혼을 목적으로 온 중국교포는 자신과 위장결혼자는 “처음부터 목적이 다르다”며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자신이 다른 중국교포나 한국인에게 ‘위장결혼자’로 비추어질까봐 이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린다고 하였다(중국교포 사례2와 23). 따라서 “중국교포 여성은 위장결혼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위장결혼자나 그렇지 않은 혼인이주자 모두에게 아주 가까운 친인척끼리만 왕래하지, 다른 중국교포 모임이나 한국인과의 모임 등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다.

VII. 맺는 글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이들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로의 혼인이주 추이는 1990년대 이후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 노총각들과 도시 하류층 특히 재혼남성의 배우자로 유입되었다. ‘혼혈의 두려움’ 때문에 외국인 신부로는 중국교포 여성이 선호되었고, 동시에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바람’이 거세어지면서 한국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증가하였다. 이들 중국교포 여성들은 말이 통하고 외모도 차이가 없어서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쉬우므로, 위장결혼이건 아니건 혼인이주 후에 기대와 다르면 가출도 불사하였다. 한편 국내 혼인이주에는 통일교의 역할도 커서, 초기에는 주로 일본인 여성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필리핀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들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업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국제결혼알선기관의 증가로 외국인 신부의 국적이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인터뷰 대상인 중국교포의 경우에는 혼인이주 후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식당을 차린 경우도 있고,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한국남성을 만나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국내로 혼인이주한 사례(중국교포 사례4의 며느리)도 있어서, 파이프와 로스(Piper and Roces, 2003)의 지적처럼 노동이주자나 혼인이주자나 의 경계가 모호하였다. 특히 이들 혼인이주자 여성은 주로 내국인 하류층과 결혼하게 되므로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로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서로 다른 기대차이로 인한 갈등의 내포 등을 살펴보았으며, 본 조사의 혼인이주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방쓰기, 가출, 이혼 혹은 이혼거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나 필리핀 여성에 비해 중국교포 부인에게 가출과 이혼 등이 높은 이유는 물론 위장결혼도 관계가 있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생활이 이제는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초기에는 딸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지금은 꺼리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교포 혼인이주자의 한국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과 결혼했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조건 이들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도 한국인 이웃에 대해 무관심으로 맞대응하고 있었

다.

중국교포 여성과의 위장결혼이 증가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중국교포는 곧 위장결혼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혼인이주를 통해 이 땅에서 잘 살아 보려고 하는 중국교포 여성에게 해를 미치고 있었다. 즉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인 남편으로 하여금 중국교포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생활비를 안 주거나, 부인의 국적취득을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장결혼자와 그렇지 않은 혼인이주자 모두에게 가까운 고향 친인척과의 만남 이외의 다른 중국교포나 한국인 이웃과의 모임을 꺼리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혼인이주는 국가간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국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사적생활에도 침투하여 부부관계의 계급성과 가부장제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치 노동유입국의 자본가가 보다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찾듯이, 이들 유입국 남성들은 보다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부인을 찾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 주부 내에서도 국적이 계급의 주요한 기준(또는 자산)이 되어, 남편, 시댁, 친척, 이웃과 사회가 일본인 주부와 중국교포 및 다른 아시아인 주부를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부부관계의 계급화와 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로의 역행에 대해 혼인이주 여성들은 각각이 지닌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중국교포 여성들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쉬우므로 취업으로 또는 가출로 대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 김민정(200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정선(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2004년 6월 4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5-41.
- 김애령(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문옥희(2004),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및 사회지지체계 조사결과 분석내용”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 2004년 12월 30일, 광주여성의 전화 2층 교육실, pp.47-65.
- 민가영(2004), “로컬 가부장제와 글로벌 자본의 충돌과 공모: 중국 조선족 공동체 해체 주범으로 재현되는 중국 조선족 ‘여성 유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2004년 6월 4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43-71.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3-8 연구보고서.
- 박종삼(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숭전대학교 논문집 12: 99-136.
-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 2004년 12월 30일, 광주여성의 전화 2층 교육실, pp.1-46, 85-99.
- 법무부(2001. 2),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국내체류실태” 내부자료.
- 서영주(2001),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강원도 여성정책실,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2001년 9월 7일 춘천, pp.21-75.
- 석원정(2004),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본회 10주년 및 여성주간기념, 이주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여성과 이주현실》 2004년 6월 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28-45.
-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위험(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험)(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 와타나베 미유끼(2004), 《외국인 주부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11. 3, 충북도청 회의실.
- 윤형숙(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pp.321-349.
- _____(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발표논문, pp.1-25.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충남여성개발원, 2003년 11월 6~7일.
- 이운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인봉숙(2001),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근정(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성매매근절운동팀 강연회자료집》 2003년 11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포스코관, <http://www.han-sori.org> (접근일: 2004/7/14).
-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1999),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_____(200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_____(2003), 《한국의 사회지표》
- 한주연(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Hsia, Hsiao-Chuan (2004), “Internationlization of Capital and the Trade in Asian Women: The Case of “Foreign Brides” in Taiwan” Delia D.

- Aguilar and Anne E, Lacsamana Edit. *Women and Globalization*, New York: Humanity Books, pp.181-229.
- Kim, Bok-Lim C. (1972),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5):273-279.
- _____ (1977),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shadows" *Amerasia Journal*, 4(1):91-115.
- Lee, Hye-Kyung (2003), "Gender, Migration and Civil Activism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1-2):127-153.
- Lee, Daniel B. (1981),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A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 O'Rourke, Kate (2002), "To Have and to Hold: a Postmodern Feminist Response to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0(4)476-497.
- Perez, Beverly Encarguez (2003), "Woman Warrior Meets Mail-Order Bride: Finding an Asian American Voice in the Women's Movem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211-236.
- Piper, Nicola (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321-338.
- _____ and Mina Roces, ed.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Schaeffer-Grabiell, Felicity (2003),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Ph.D. Dissertation, Americ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nnesota.
- Simons, Lisa Anne (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Thai, Hung Cam (2002), "Clashing Dreams: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In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dited by B. Ehrenreich and A.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230-253.
- Truong, Thanh-Dam (1995),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International Female Migration and Japan: Networking, Settlement and Human Rights” December 12-14 1995, at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eiji Gakuin University, Tokyo.

Walby, Sylvia (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 Blackwell.

Wang, Hong-zen and Shu-ming Chang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International Migration*, 40(6):93-116.

Yu, Kojima (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199-210.

Yuh, Ji-Yeon (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